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1402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2230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14024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윤승현

변론종결 2022. 12. 20.

판결선고 2023. 1. 3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C의 기망에 속아 소외 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면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소외 회사의 투자금을 C와 함께 사용하는 등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위 편취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위적 청구).

나.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6. 21.경 피고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억 7,000만 원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C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인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여기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C가 2018. 2. 초순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통해 스리랑카 대부업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요청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8. 2. 12. 1,000만 원, 2018. 2. 13. 2,000만 원, 2018. 6. 19.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C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망행위에 공동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와 C의 관계,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선해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에 공모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와 같은 부정 급여 수령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뿐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 갑 제2 내지 4호증,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는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9. 6. 21. 매매대금 1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시인 2019. 9. 6.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이 사건 아파트 중 C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차액인 78,947,620원을 수령한 사실, C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개월 후인 2019. 8. 21.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위 매매대금 128,947,620원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C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해 온 과정, 혼인 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도, 각자의 재산 보유상황 및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각 재산의 정도,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장래 생계유지수단의 유무, 자녀 양육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 중 상당 부분이 C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같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던가,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증여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